

투자설명서 변경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변경 대상 펀드

NO	펀드명칭
1	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2	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재간접형)
3	프랭클린 오퍼튜니티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4	프랭클린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 변경 사항

■ **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모펀드 명칭 (문서 전반)	<u>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u>	<u>템플턴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u>	이 펀드가 투자하는 모펀드의 변경된 명칭 반영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p>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p> <p>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p>	<p>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p> <p>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p> <p>4. 원본손실위험, 투자등급자산에 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p>	개정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반영

		<p>하시기 바랍니다.</p> <p><u>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에는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시 해당 펀드가 소규모펀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p>2014년 10월: 투자대상자산 : 환매조건부 채권매수 추가</p>	투자대상에 환매조건부 채권매수 추가
제 2 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정보 갱신
제2부. 8. 나. 투자 제한	<p>(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에게 <u>단기대출로</u> 운용하는 행위</p>	<p>(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 <u>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u> 운용하는 행위 (가)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p>	투자대상에 환매조건부 채권매수 추가
제 2 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정보 갱신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p>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최근 사업 연도 기준 업데이트</p> <p>라. 운용자산규모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제 4 부.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u>SC 펀드서비스</u>	<u>SC 은행 펀드서비스부</u>	사무관리 회사 사 명 변경 반영
--------------------------------	-----------------	---------------------	----------------------------

■ 템플턴 차이나 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재간접형)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 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받 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추가)</u>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 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받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단, 간이투자 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u>	개정 기업 공시 서식 작성 기준 반영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 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 장은 <u>없습니다.</u>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 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u>없으며, 과 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 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u>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 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u>원본손실위험, 투자등급자산 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	
	<u>(추가)</u>	9. <u>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 만(소규모펀드)인 경우에는 분산투자 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 하거나 임의해지가 될 수 있으니, 투 자 판단시 해당 펀드가 소규모펀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u>(추가)</u>	2014년 10월: 투자대상자산 : 환매조건부 채권매수 추가	투자대상에 환매 조건부 채권매수 추가
제 2 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
제2부. 8. 나. 투자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투자대상에 환매

<p>제한</p>	<p>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u>에게 단기대출로</u> 운용하는 행위</p>	<p>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u>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u> 운용하는 행위 <u>(가) 단기대출</u> <u>(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u></p>	<p>조건부 채권매수 추가</p>
	<p>[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이해관계인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u>에게 단기대출로</u> 운용하는 행위</p>	<p>[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이해관계인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u>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u> 운용하는 행위 <u>가.단기대출</u> <u>나.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u></p>	
<p>제 2 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정보 갱신</p>
<p>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p>중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p>	<p>중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p>	<p>손익상계 연장</p>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영실적 등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최근 사업 연도 기준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
제 4 부.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SC 펀드서비스	SC 은행 펀드서비스부 사무관리회사 사명 변경 반영

■ 프랭클린 오퍼튜니티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반영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자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에는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시 해당 펀드가 소규모펀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2 부. 2. 집합투자기관의 연혁	<u>(추가)</u>	2014년 10월: <u>투자대상자산 : 환매조건부 채권매수 추가</u>	투자대상에 환매조건부 채권매수 추가
제 2 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
제2부. 8. 나. 투자제한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 <u>에게 단기대출로</u> 운용하는 행위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 <u>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u> 운용하는 행위 <u>(가) 단기대출</u> <u>(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u>	투자대상에 환매조건부 채권매수 추가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이해관계인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u>에게 단기대출로</u> 운용하는 행위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이해관계인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u>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u> 운용하는 행위 <u>가.단기대출</u> <u>나.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u>		
제 2 부. 13. 나. 집합투자기관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관의 재무 및 운영실적 등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최근 사업 년도 기준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4 부.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u>SC 펀드서비스</u>	<u>SC 은행 펀드서비스부</u>	사무관리회사 사명 변경 반영

■ 프랭클린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반영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자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추가)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에는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판단시 해당 펀드가 소규모펀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014년 10월: 투자대상자산 : 환매조건부 채권매수 추가	투자대상에 환매조건부 채권매수 추 가
제 2 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
제2부. 8. 나. 투자 제한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투자대상에 환매조건부

	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에게 <u>단기대출로</u> 운용하는 행위	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과 <u>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u> 운용하는 행위 (가)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채권매수 추 가
제 2 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영실적 등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최근 사업 년도 기준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4 부.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SC 펀드서비스	SC 은행 펀드서비스부	사무관리회사 사명 변경 반 영

3. 효력 발생일

2014년 10월 30일

자세한 내용은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